㉾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 [6574]/ 보험팀장 손용석 [6571]/ 팀원 문성현 [6587]/E-mail: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1274호

시행일자 2019. 12. 20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78호(2019. 12. 19.)
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4555호(2019. 12. 19.)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에 따른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72호, 2018.4.1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.

○ 주요 개정 내용 :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개정

○ 시행일 : 2019년 12월 19일

붙임 : 고시개정문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